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33
------	------

제출일자 : 2023. 11. 1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 구의회 보고 관련 규정 변경(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10. 11. ~ 2023. 10. 31.) 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근주민 및 지역 구의원”을 “인근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민원이”를 “민원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천구에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예상되는 주민”을 “예상되는 주민을 말한다”로 한다.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 중 “투자사업중”을 각각 “투자사업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기타”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와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문”을 “제3항에 따른 예고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견 제출”을 “의견제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을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통지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 ⑤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당사자 에게”를 “당사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 등)”을 “(감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입공사예고”를 “투입공사 예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기준”을 “감사장 수여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u>인근주민 및 지역 구의원</u>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u>민원</u>이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u>금천구에서</u>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u>금천구 행정구역</u> 내에서 시행되는 <u>유관기관</u>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p> <p>2. “특정장비”라 함은 「<u>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u>」 제5조 규정에 의한 <u>소음발생 건설기계</u>를 말한다.</p> <p>3. (생략)</p> <p>4. “소음·진동 피해주민”이라</p>	<p>제1조(목적) ----- ----- ----- ----- <u>인근 주민</u> <u>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u> ----- ----- <u>민원</u> ----- -----.</p> <p>제2조(정의) ----- ----- -----.</p> <p>1. ----- ----- ----- <u>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u> ----- ----- -----.</p> <p>2. “특정장비”라 함은 「<u>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u>」 제5조에 따른 <u>소음발생건설기계를</u>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p>

함은 시·구비 투자사업중 중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투자사업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
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의 투자사업중 1톤 이상
의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제5조(절차) ① 구청장은 특정장
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
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를 하여야 한다.

② 특정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기타 구
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의 계약상대자
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별지 제2

----- 예상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 투자사업 중 -----

-----.

1. ~ 3. (현행과 같음)
4. ----- 투자사업 중 -----

제5조(절차) ① 서울특별시 금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
-----.

② -----
-----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제 신청서와 그 밖에 -----
-----.

③ -----
----- 별지 제2

호 서식의 안내문을 공사예정부
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문
에는 공사 예고제의 취지와 공
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
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
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
부할 수 있다.

⑤ 의견제출은 안내문 게시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
식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
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
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
고문-----
-----.

④ 제3항에 따른 예고문-----

-----.

⑤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의견제
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
사 예고 관련 의견제출서를 작
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의견
제출-----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통지
서를 -----.

<삭 제>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장비 투입공사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
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
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
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포상기준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금천구표창조례」를 준용한
다.

--- 투입공사 예고 -----

-----.

② --- 감사장 수여 기준-----

----- 「서울특별
시 금천구 표창 조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고상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로과 도로계획팀 송수정
연락처	2627-1804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주민 및 지역 구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이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
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건설기계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소음·진동 피해주민”이라 함은 시·구비 투자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투자사업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설치공사
2. 하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
3. 공원 신설 및 보수 공사
4. 그 밖의 투자사업중 1톤 이상의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제4조(의견제출 등) 이 조례에 의하여 특정장비투입공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투자사업 공사장에 인접한 필지의 건물주
2. 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소음 65dB(A), 진동 65dB(V)이상)

제5조(절차) ① 구청장은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특정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기타 구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공사예정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문에는 공사 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의견제출은 안내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등) 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 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5일 이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회의에서도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장소에 의견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협의를 불가함으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전에 공사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즉시(문서, 구두) 알려야 한다.

제8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특정장비 투입공사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포상기준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605호, 2010.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계 법령

소음 · 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